**신용정보활용 체제**

제정 2017.02.23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**□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**

1. 이용목적

1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
2) 마케팅

3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류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1)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2) 신용거래정보

- 개인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- 기업신용거래정보 :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
3) 금융질서 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4) 신용능력정보

- 개인의 직업, 재산, 기업 및 법인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및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등

5) 공공기록정보

 -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 등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

-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**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**

1, 제공대상자

- 금융투자협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업자,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

**□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전자적 파일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**□ 신용정보의 취급위탁**

-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현황 : 없음

**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**

1. 본인 신용정보 제공•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4. 개인신용정보 제공•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**□ 신용정보관리•보호인**

- 성명 : 이은영

- 직책 : 준법감시인